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**701** 제출년월일: 2009. 6.

제 출 자: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평생교육법의 "제9조"가 "제5조"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을 반 영하고,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O 평생교육법 인용 조문 변경(안 제1조)
 - 제9조 → 제5조
- O 조문 용어 정리(안 제1조, 안 제7조, 안 11조)
 - 규정에 의거 → 따라
 - 인 → 명
 - 개의하고 → 시작하고

3. 근거법규

- O 평생교육법 제5조
- 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5. 참고사항
 - O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09. 6. 1. ~ 6. 21)

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9조의 규정에 의거"를 "제5조에 따라"로, "추진하기 위함" 을 "추진함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·제3항·제4항 중 "인"을 "명"으로 각각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"개의하고"를 "시작하고"로 한다.

제12조 중 "「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"를 "「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 례」에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평생교육법」 <u>제9조의</u> 규	제1조(목적) 제5조에 따
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중구(이하"구"라 한 다.)의	라
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	추진함
업을 원활하게 <u>추진하기 위함</u> 을 목적으로 한다.	
	제7조(구성) ①
	1 <u>명</u> 15 <u>명</u>
제7조(구성)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	
1<u>인</u>을 포함한 15<u>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.	②(현행과 같음)
②(생략)	3
③위원은 구 본청의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 는	
부서의 국장, 관할 교육청 교육장, 구의회 의장이	3명
추천한 구의원 3인 과 평생학습관련 기관·단체의	
장,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	
④협의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<u>1인</u>	4
을 두되, 간사는 평생학습 담당과장으로 한다.	1명
	제 11조(회의 등) ①(현행과 같음)
②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	
수의 출석으로 <u>개의하고</u> , 출석위원 과빈수의 찬성으	<u>시작하고</u>
로 의결한다.	
제12조(수당 등)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	
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	<u>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」에</u>
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	 .

의 안 심 사 보 고 서

(의안번호 701)

1. 의 안 명 :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09. 6. 25(목)

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 : 2009. 7. 2(목) 라. 위원회 상정 : 2009. 7. 9(목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)

가.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, 나.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가. 평생교육법 인용 조문 변경(안 제1조)
 - ▶제9조 → 제5조
- 나. 조문 용어 정리(안 제1조, 안 제7조, 안 11조)
 - ▶ 규정에 의거 → 따라▶ 인 → 명
 - ▶ 개의하고 → 시작하고

5. 관련법규

- O 평생교육법 제5조공직자윤리법 제24조 ~ 제29조
- 6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홍성춘)
 - 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